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89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 : 엄태영 · 조지연 · 이달희

윤한홍 · 김상훈 · 김소희

김예지 • 박덕흠 • 서천호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다른 정보들과 잘 융복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공간정보를 지정·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33종)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개념적·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생성한 공개제한 공간정보까지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관리기관별

로 시행함에 따라 동일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보안심사를 중복으로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보안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자체 구축·생산하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적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기반을 마련함(안 제 2조·제5조·제19조·제29조).
- 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 으로 확대함(안 제34조).
- 다. 관리기관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 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삭제하는 등 보안관리규정 제·개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
- 라.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 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제35조의3·제35조의4 및 제

35조의5).

- 1) 보안심사를 받은지 1년 이내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심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함.
- 2) 관리기관별로 지정하던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지정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마. 군사시설 등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보 안성검토 및 보안처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 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융복합·활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적인 공간정보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2의2.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여 구축 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본공간정보의 선정·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지형·해안선·행정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제1항"으로. "기본공간정보

- (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기본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보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중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를 "절차, 기본공간정보·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로 한다.
 - ③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④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 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 랫폼을 통하여 공개·제공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

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구축하고자"를 "구축 또는 갱신하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구축"을 각각 "구축 또는 갱신"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를 "관리기관의"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1. 관리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가정보원 장
- 2. 관리기관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인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 2. 보안관리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관리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관리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정"을 "지정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리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우에"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리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우에"를 "경우"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전문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기관"을 "국토교통부장 관 및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관리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등) ① 공간정보를 생산 ·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삭제·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 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처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안 성 검토 업무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안처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 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3(종전의 제38조의2) 중 "전문기관의"를 "전문기관의 임직원과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로, "제129조"를 "제127조 및제129조"로 한다.

제40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기관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		
	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간정		
	보를 생산・융복합・활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초적인 공		
	간정보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		
	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		
	스"란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		
	여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		
	이스를 말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②		
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6. 기본공간정보의 선정·구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생략)

③ ~ ⑦ (생 략)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 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 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 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 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베이 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 이 제2항에 따라 구축ㆍ관리하 는 데이터베이스(이하 "기본공 간정보데이터베이스"라 한다) 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 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형 · 해안선 · 행정경계 · 도로 |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

② 제1항-----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 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보를-----

③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 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④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데 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통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관리하여야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 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 이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 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연 구를 수행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 정보통합체계 및 「공간정보산 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공 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공 개・제공할 수 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 정보 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 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 스를 구축・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 기관의 장은 <u>새로운 공간정보</u>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 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 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 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u>구축하고자</u> 하는 공간정보데 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 었는지 여부
- 2. (생략)
- ② 관리기관의 장이 <u>새로운 공</u> <u>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u> 구축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u>공간</u> <u>정보데이터베이스의</u>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

절차, 기본공간정보·기본공 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
, = , = ,
, = , = ,
, = , = ,
, = , = ,
② <u>공간정보</u>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
<u>신</u>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u> 또는 갱신</u>

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 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 베이스의 <u>구축</u>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u>구축</u>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저 등)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 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③
<u>구축 또는 갱신</u>
<u>구축 또</u>
<u>는 갱신</u>
④·⑤ (현행과 같음)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의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 ④ (생 략)

제35조(보안관리) ① (생 략)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신 설>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보안관리) ① (현행과 같 음)

(<u>2</u>) -----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후단 삭 제>

- 1. 관리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 가정보원장
- 2. 관리기관이 공공기관,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인 경우: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
-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

<신 설>

<신 설>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생 략)

<신 설>

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안관리규정 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 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 2. 보안관리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자구 수정 등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 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관리기관이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은

② (생략)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종전에 받 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정하여 <u>운영-----</u>. <u>다만</u>,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의 특 수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전 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

- ② <u>관리기관</u>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u>경</u> <u>우에</u>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 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 , –		하여	量
제35조.	의2제1	[항에	따른	보안	심
사 업무	무를 건	구행하:	게 할	수	<u>있</u>
<u>다.</u>					
<u>③</u> 국민	토교통	부장관	- 및	중앙	행
정기관					
			<u>경</u> -	<u> </u>	
<u>④</u> 국민	토교통	부장괸	- 및	중앙	행
정기관					
		- <u>경우</u> -			
				•	
		,1,1	_1 17		
제35조의	4(보안	심사	전문	-기관	의
제35조의4 지정취:					
	소 등	1 1 3	국토교	통부	<u>장</u>
지정취:	소 등	1 1 3	국토교	통부	<u>장</u>
지정취:	소 등	1 1 3	국토교	통부	<u>장</u>
지정취:	소 등	1 1 3	국토교	통부	<u>장</u>
지정취:	소 등	1 1 3	국토교	통부	<u>장</u>
지정취:	소 등	1 1 3	국토교	통부	<u>장</u>
지정취:	소 등	1 1 3	국토교	통부	<u>장</u>
지정취:	소 등	1 1 3	국토교	통부	<u>장</u>
지정취:	소 등	1 1 3	국토교	통부	<u>장</u>

다.

- 1. ~ 5. (생략)
- ② (생략)
-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① <u>관리</u>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 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 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 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① <u>국토</u>
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6(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등) ① 공간정보 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 하도록 위장·삭제·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 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 사시설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중 국방부 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

- 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한 시설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처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업무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보안처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
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같은 법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삭 제> 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 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 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 다.

제3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의제) 전문기관의 임직원과 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 는 수탁기관의---------제127조 및 제129조-----

1. ~ 3. (현행과 같음)

<u>은 자</u>